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라남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 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4. 30.

광양상공회의소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

조 건	내 용
주소지	▶광양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기업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1)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사업장 총괄카드 "대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철강(연관)기업: 기업 리스트 확인, 리스트에 없는 경우 별도 증명 ※ 전남일자리정보망 및 광양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게시

광양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 인정 범위

- 1)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 철강업종(C24, C25) 해당 기업
- 2) 사업자등록증 내 업태, 종목이 철강업종으로 인정되는 기업
- 3) 신청일로부터 2년 내 광양시 철강 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 거래관계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거래처 업종코드 출력본 증빙
- 4) 철강기업의 협력사 및 파트너사 확인 자료,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총괄카드(업종), 국세청 업종코드(업태 및 업종),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 등
 ※ 철강산업 및 연관기업 리스트 게시(전남일자리정보망 및 광양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게시)

□ 지원내용 : 고정노동비용(최대 1,50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전체 근로자의 50% 이하,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항목)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구 분	지원항목
퇴직연금 기여금	▶퇴직연금(DB, DC형) 사업주 부담 납입금
사회보험료	▶매월 지출되는 근로자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건강검진비	▶기업-병원 계약, 근로자 대상 건강검진비 사업주 부담분
기타	▶기업체 내규 등을 근거로 지원하는 고정노동비용 사업주 부담분(피복비 및 안전장구류, 법정 의무교육 등)

○ (인정범위) 2026.1.1.부터 접수일까지 사업주 지출 내역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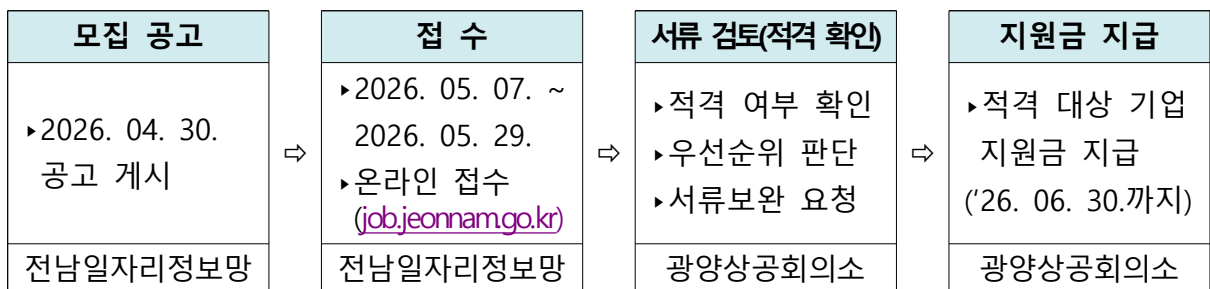
구 분	증빙자료
퇴직연금 기여금	▶금융기관 발행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 납부내역서, 가입자 명부, 이체확인증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납부내역서 ※ 국민연금 : ①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②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 고용보험 : ①보험료완납증명서, ②부과고지 보험료
건강검진비	▶병원계약 : 견적서, 계약서, 이체증, 해당근로자 검진확인서 등 ▶실비정산 : 이체증, 영수증, 해당근로자 검진확인서 등
기 타	▶피복비 및 안전장구류, 법정 의무 교육비 등 ※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해당근로자 교육 수료증

※ 신청 가능한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 계약으로 진행하지 않아 계약서가 없을 경우,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절차



2

신청 및 모집공고

□ 신청기간 : 2026. 5. 7.(목) ~ 2026. 5. 29.(금)

○ 온 라 인 : 2026. 5. 7.(목) ~ 5. 29.(금)

○ 오프라인 : 2026. 5. 14.(목) ~ 5. 29.(금)

□ 모집기업 : 70개사

○ 매출 증감 여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 모집대상 초과 시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기준

① 1순위 :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 하락률이 큰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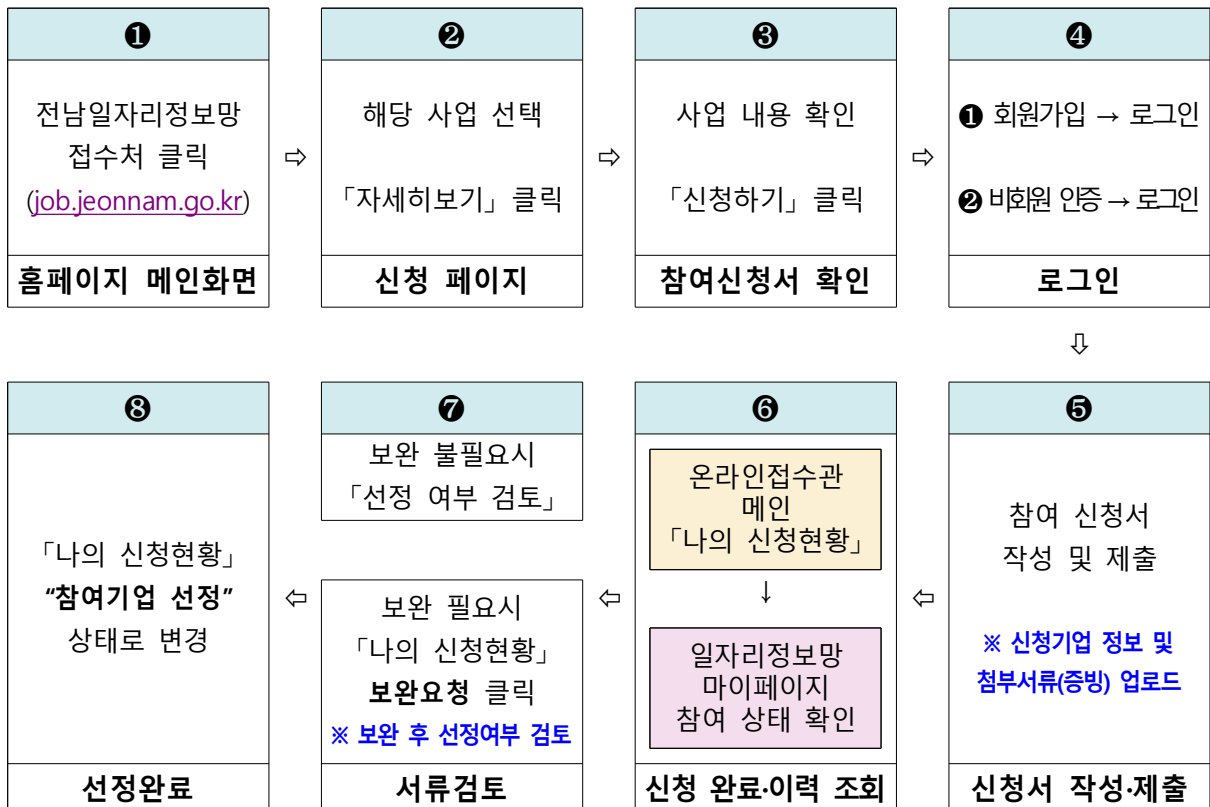
② 2순위 :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 감소액이 큰 기업

※ 동일한 조건의 경우 1) 광양시 소재 업력이 오래된 순, 2) 피보험자 수가 많은 순

※ 매출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4~2025년)" 등으로 확인함

□ 신청방법

○ 원 칙 : 온라인 접수(2026. 5. 7.(목) 09시부터 ~ 5. 29.(금) 17시까지)



○ 예 의 : 오프라인 접수(2026. 5. 14.(목) 09시 ~ 5. 29.(금) 17시까지)

- 신청장소 : 광양상공회의소 8층 교육장(광양시 항만대로 465)

- 신청 가능 시간 : 월~금 9시~17시(점심시간(12시~13시)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 방문 시 온라인 신청 서비스

▶ 접수 창구가 매우 혼잡할 경우 오프라인 접수(서류 접수) 및 수행 기관 온라인 접수 지원 제공

※ 문의 : 광양상공회의소 담당자(☎ 061)793-5233, 761-5227)

□ 제외대상

지원 제외 대상	
기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기업 및 근로자 고정노동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고용보험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철강산업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 등 유사 사업 및 지원금 수급자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자의 경우 사회보험 항목으로 지원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기타 제외가 인정되는 자

□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비 고
필수 제출 서류	1 ▶[서식1] 참여 신청서	
	2 ▶[서식2]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3 ▶[서식3] 사업주 확인서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5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6 ▶[서식6] 부정수급 방지 안내	
	7 ▶사업자등록증 사본(광양시 소재 사업장 확인)	
	8 ▶사업장 총괄카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정보조회 > 정보조회 소개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 화면 인쇄	
	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과세기간: 2024년 ~ 2025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국세 민원 서류 찾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 및 발급	
	10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발급범위: 전체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보험구분 [고용] 선택 > 사업장 관리 번호 입력 > 월 평균보수 포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증명원 출력 ※ (1회차 제출) 조회기간 : 2026. 1. 1. ~ 신청일 (현 취득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 (2회차 제출) 조회기간 : 2026. 1. 1. ~ 지원 후 6개월 경과 시점	2회 제출
	11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	
	12 ▶기업 통장 사본	
	13 ▶지원항목별 구비서류(증빙자료)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기타 서류	14 ▶철강산업 기업 및 연관 기업 입증서류 ※ 거래관계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업종코드 출력본*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찾기 > 사업장용 [고용] 선택 > 사업장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출력	

3

유의사항

- 본 공고의 지원일정,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 예정
- 모든 사항은 신청일 기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만 판단하며, 증빙 불가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 등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서류(신청서 등)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보완은 보완요청 안내(문자, 메일 등)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 판단함
- 자격조건 검증 과정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본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의 지침에 따름
-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의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 「광양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 목록은 전남일자리정보망, 광양상의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에 게시한 「광양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에 해당 기업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관계 서류 등을 통해 입증 가능



서식

**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

[서식 1]

『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담당자 정보	담당자명
	소속부서/직함
	연락처

철강분야 연관성	※ 광양시 소재 기업(아래 조건 중 하나이 상에 해당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24, C25 기업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 내 철강업종 <input type="checkbox"/> 신청일로부터 2년 내 광양시 철강업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input type="checkbox"/> 그 외 관련된 기타업종 -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순천) 협력사 및 파트너사 등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우선순위	매출하락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2024년 대비 2025년 하락 여부
	매출하락액	2024년(백만원) → 2025년(백만원)
	매출하락률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신청 분야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 기여금	<input type="checkbox"/> 사회보험료	<input type="checkbox"/> 법정 의무 교육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총액 ※증빙 서류 필수
	_____원	_____원	_____원	_____원	_____원

『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 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서명 또는인)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평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 고정노동비용』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내용				
		계	퇴직연금 기여금	사회 보험료	건강검진	기타
		원	원	원	원	원
계	명	신청금 : 원		기업명 : (인)		

『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 사업주 확인서

※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사업 참여 자격 제한사유 해당 여부

지원 제외 기업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예 [] 아니오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기업 및 근로자 고정노동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예 [] 아니오
⑤ 고용보험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 예 [] 아니오
⑥ 본 사업 「사업운영 공고문」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예 [] 아니오

※ 본인은 위의 내용의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2026년 월 일

기업명

(서명 또는 인)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_____ 사업장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연락처 : _____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 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거주지(시도),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본인 확인참여 자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 ~ 지원 종료일로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별도 암호화 처리)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4.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_____ (서명 또는 인)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개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4,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거주지(시도), 최종학력,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별도 암호화 처리)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거주지(시도), 최종학력,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행기관</td> <td>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종료일로부터 5년</td> <td>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별도 암호화 처리)</td> </tr> </table>	수행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별도 암호화 처리)
수행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별도 암호화 처리)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관련 기관·단체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연락처)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26년 월 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 부정수급 방지 안내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 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음**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지급거절 포함)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
- 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동법 제43조(양벌규정)>

《 부정수급 사례 》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 ①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 부정수급 관련 체크리스트 》

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예 []아니오
② 본 사업은 광양 철강산업 상용직 근로자 안심 패키지(건강복지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 하며, 중복신청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자의 경우 사회보험 항목 중복수급 불가	[]예 []아니오
③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주민등록 및 신청일 기준 재직 기업에 근무해야 함 을 인지합니다.	[]예 []아니오

위와 같이 '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의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기업 대표자 / 근로자 성명 : (인)

※ 수혜받는 대표자 및 모든 수혜 근로자 개별 작성(확인 후 삭제)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귀하